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공인어학시험 등 응시 부담
완화를 위한 6개 법령의
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

제출자	국무총리 한덕수 (행정안전부 등 6개 소관)
제출 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공인어학시험 등 응시 부담 완화를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경영지도사, 기술지도사, 박물관·미술관 준학예사, 변리사,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시험 과목 중 영어 등 외국어 과목을 대체하는 시험의 경우 성적 인정기간을 2년 또는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,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과 일반군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과목 중 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경우 성적 인정기간을 폐지하여 응시자의 수험준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인사혁신처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법령별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4. 2. 8. ~ 3. 4)

공인어학시험 등 응시 부담 완화를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

제1조(「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의 개정)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3항 중 “2년이 되는 날”을 “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”로, “취득한 성적”을 “취득한 성적(1차 시험의 응시원서 접수마감일까지 발표되는 성적으로서 제4조제2항에 따른 공고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확인된 성적으로 한정한다)”으로 한다.

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다음 각 호의 서류를”을 “사진(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.5센티미터, 세로 4.5센티미터인 것으로 한다) 1장을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.

제2조(「군무원인사법 시행령」의 개정)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4의3 비고 전단 중 “필기시험 시행예정일부터 역산(逆算)하여 4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만 해당하며,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(등급)가 발표된 시험”을 “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등급이 발표된 시험”으로, 같은 비고 전단 중 “기준점수

가”를 “기준등급이”로 한다.

제3조(「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의 개정)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4의2의 표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시험의 종류	기준등급
--------	------

별표 4의2 비고 전단 중 “시행예정일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4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서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”를 “필기시험”으로, 같은 비고 전단 중 “점수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, 기준점수가”를 “등급이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, 기준등급이”로 한다.

제4조(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」의 개정)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의2 비고 제1호 중 “3년”을 “5년”으로 하고, 같은 비고 제2호 중 “위”를 “제4조제2항에 따른 공고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위”로 한다.

제5조(「변리사법 시행령」의 개정) 변리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2 비고 제1호 중 “2년이 되는 날”을 “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”로 한다.

제6조(「행정사법 시행령」의 개정) 행정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3항 중 “원서접수 마감일 전 2년 이내에 실시된 외국어능력검정시험(별표 2에 규정된 시험)을 “제2차시험의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중 별표 2에서 정한 외국어능력검정시험에서 취득한 성적(제2차시험의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발표되는 성적으로서 제8조제2항에 따른 공고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확인된 성적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조, 제4조, 제5조 및 제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「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) 「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토익 등 영어시험의 시행기관에서 정한 영어시험 성적의 유효기간이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만료하는 성적으로서 같은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공고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확인된 성적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」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) 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」 별표 1의2 비고 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시행기관에서 정한 시험 성적의 유효

기간이 있는 경우 그 유효기간이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만료되는 성적으로서 같은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공고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확인된 성적부터 적용한다.

제4조(「변리사법 시행령」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) 「변리사법 시행령」 별표 2 비고 제1호의 개정규정은 토익 등 영어시험의 시행기관에서 정한 영어시험 성적의 유효기간이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만료되는 성적으로서 같은 영 별표 2 비고 제2호에 따른 공고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확인된 성적부터 적용한다.

제5조(「행정사법 시행령」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) 「행정사법 시행령」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시행기관에서 정한 시험 성적의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 그 유효기간이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만료되는 성적으로서 같은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공고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확인된 성적부터 적용한다.

제6조(「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대해서는 「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4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3조(지도사자격시험) ①·② (생략) ③ 1차 시험 과목 중 영어 과목의 경우에는 그 시험의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<u>2년이 되는 날</u> 이후에 실시되는 영어능력검정시험 중 별표 3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(이하 이 조에서 “영어시험”이라 한다)에서 <u>취득한 성적</u> 으로 시험을 대체한다.	제3조(지도사자격시험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 ----- ---- <u>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</u> <u>해의 1월 1일</u> ----- ----- ----- ----- <u>취득한 성적(1</u> <u>차 시험의 응시원서 접수마감일</u> <u>까지 발표되는 성적으로서 제4</u> <u>조제2항에 따른 공고에서 정하</u> <u>는 방법에 따라 확인된 성적으</u> <u>로 한정한다)</u> ---.
④ ~ ⑥ (생략) 제7조(지도사의 등록) ① 법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도사의 업무를 시작하기 위하여 등록하려는 사람은 중소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지도사 등록신청서에 <u>다음 각 호의 서류를</u> 첨부하	④ ~ ⑥ (현행과 같음) 제7조(지도사의 등록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 <u>사진(최근 6개월 이내에 촬</u>

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 <u>1. 사진(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.5센티미터, 세로 4.5센티미터인 것으로 한다) 1장</u> <u>2. 실무수습수료증 사본</u> ② (생 략)	<u>영한 가로 3.5센티미터, 세로 4.5센티미터인 것으로 한다) 1장을 ---.</u> <u><삭 제></u> <u><삭 제></u> ② (현행과 같음)
--	---

행정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9조(시험의 과목 및 방법) ① · ② (생 략) ③ 외국어번역 행정사의 제2차 시험 중 영어, 일본어, 중국어, 스페인어, 프랑스어, 독일어 및 러시아어 시험은 <u>원서접수 마감 일 전 2년 이내에 실시된 외국 어능력검정시험(별표 2에 규정 된 시험으로 한정한다)</u> 으로 대 체한다.	제9조(시험의 과목 및 방법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 ----- ----- <u>제2차시험의 응 시원서 접수 마감일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이 속하 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중 별표 2 에서 정한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에서 취득한 성적(제2차시험의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발표 되는 성적으로서 제8조제2항에 따른 공고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확인된 성적</u> ----- -----.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국방부 군무원정책과	
연 락 처	(02) 748 - 5291
행정안전부 행정제도과	
연 락 처	(044) 205 - 2253
문화체육관광부 문화기반과	
연 락 처	(044) 203 - 2649
중소벤처기업부 기업구조개선과	
연 락 처	(044) 204 - 7484
문화재청 수리기술과	
연 락 처	(042) 481 - 4871
특허청 산업재산인력과	
연 락 처	(042) 481 - 5183